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allianzglobalinvestor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6월 1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6월 2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00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및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투자 결정 시 유의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
 -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 나. 최근 3년간 책임투자운용인력의 변동 여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나. 수시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

확인서

우리는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발행인인 알리안츠글로벌
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 이사로서 이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 검토한 결과, 중
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
고, 이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6월 일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이 원 일(서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신고업무담당이사 경 광 현(서명)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52104
A	31692
A2	95081
E	95082
I	9364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 펀드 용어의 정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5,000억좌

이 투자신탁은 5,000 억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협회(www.amak.or.kr) 및 운용사(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52104
A	31692
A2	95081
E	95082
I	9364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01.03.03	최초설정
2004.07.0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으로의 변경
2005.08.19	회사명 명칭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2005.11.01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008.05	갱신
2008.09	책임운용역 변경(윤장배→김유경)
2008.10	투자신탁 약관 변경: 장기 적립식 가입 고객 세제혜택
2008.11	책임운용역 변경(김유경→강정구)
200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u>AllianzGI Best Research 주식투자신탁 B-1호</u> → <u>알리안츠 Best Research 증권 투자신탁[주식]</u>
200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스 추가(Class A2: 선취클래스, Class E: 인터넷클래스) - 신탁업자 보수 인하
200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수수료 변경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투자신탁명 변경 <u>알리안츠 Best Research 증권 투자신탁[주식]</u> → <u>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u>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주 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타워 ☎ 02-2071-9900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순자산 기준, 2009.02.28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강정구	68년생	이사	7개	6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2000 동양종합금융■ 2000 삼성증권■ 2000-2008 AGI 자산운용 <p>총 경력: 15 년</p>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순자산) 및 개수
: 254억 / 사모 투자신탁 2개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일반사무 관리
			판매	환매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Class A	2001.03.03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없음			0.650%	1.540%	0.030% 0.010%
Class A2	미설정	<u>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u>	1%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0.650%	0.700%	0.030% 0.010%
Class E	미설정	<u>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u>	없음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0.650%	1.080%	0.030% 0.010%
Class I	미설정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없음			0.650%	0.000%	0.030% 0.010%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 합니다.

주3) 보수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Allianz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 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

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5월 4일부터 KOSPI Index 100%입니다.

2009년 5월 3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200 Index X 87.5%) + (Call X 12.5%)입니다.

※ KOSPI 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 됨.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

즉, 종합주가지수=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주식	60%이상 단, <u>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u>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 채권	<u>40%이하, 주식관련사채 35%이하</u>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3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35%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⑤장내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⑥수익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⑧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까지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부터 ⑧까지 및 아래의 투자제한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투자제한 ⑦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함</p>	
③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④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명목계약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p>⑤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⑥ 집합투자증권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⑧ 후순위채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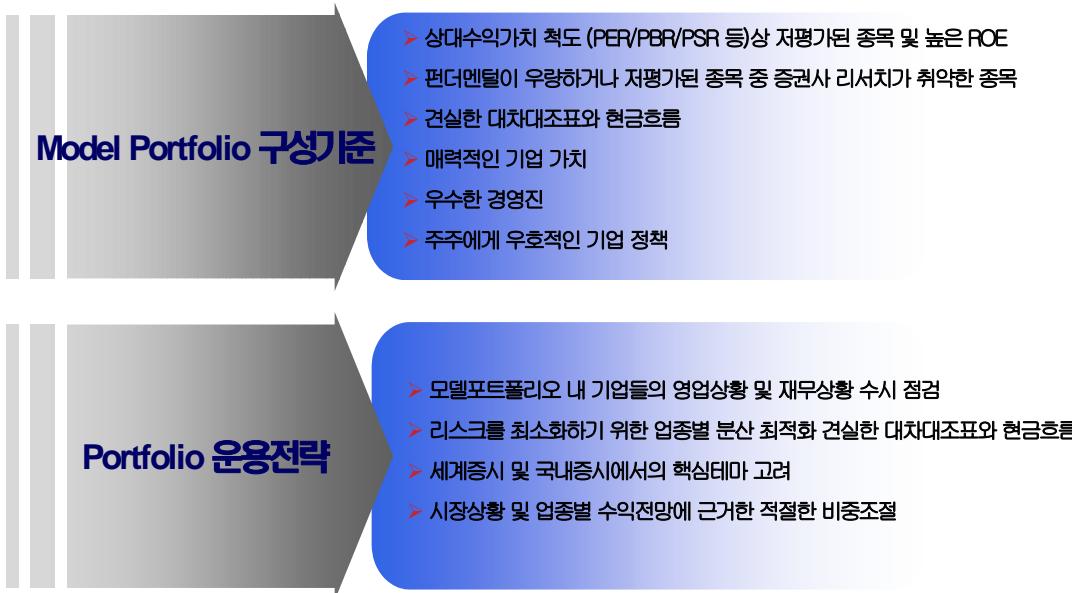
가. 투자 전략

- 펀드운용계획 전 세계적으로 700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Allianz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과정, 자체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5월 4일부터 KOSPI Index X 100%입니다.
상기의 변경 비교지수가 실제 투자 전략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으며,
2009년 5월 3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200 Index X 87.5%) + (Call X 12.5%)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
하였으나,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
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됩니다.

- 운용 전략



(참고)

*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주주들이
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 **PER(Price Earnings Ratio)**

PER은 현재주가를 주당이익(EPS)으로 나눈 것으로 이 지표는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즉,
기업의 단위당 수익력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이익이
3000 원이고, 현재의 주가는 30000 원이라면 PER는 10 배수가 되는데 이는 1 원의 수익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10 배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뜻한다. PER는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회계처리방법 등 질적인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그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PBR(Price Book–Value Ratio)**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 즉, 자기자본의 주당장부가치(BPS=순자산/발행주식수)로 나눈
비율이다. 보통주의 가치를 시장가격(분자)과 장부가치(분모)를 대비하여 본 지표인 것이다.
즉, PBR=Market Price/BPS가 된다. 이를 총액기준으로 M/B 비율이라고도 한다.

PER가 수익가치에 대비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에 PBR은 자산가치에
대비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측정한 지표라는데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

* **PSR(Price Sales Ratio)**

PSR은 주가를 주당매출액 즉, SPS(Sales Per Share)로 나눈 비율이다. 즉, PSR = Market
Price/SPS가 된다.

또한, PSR은 수학적으로 매출액 순이익률(margin)과 PER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SR = 자기자본 시장가격/매출액

$$= \text{자기자본 시장가격}/\text{순이익} \times \text{순이익}/\text{매출액}$$

$$= \text{PER} \times \text{MARGINE}$$

이는 비록 어떤 기업의 PER 가 지금은 낮지만 미래에 margin이 늘어나는 성장 잠재력이 있을

때 PSR 이 낮은 주식은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1) 리스크관리의 원칙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
-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함

(2) 리스크관리 정책

- 운용자산관련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
- 투자 의사결정과 병행하여 펀드의 시장 / 신용 /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당사의 사무수탁회사인 외환펀드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구축
-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리스크 관리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Daily Monitoring 및 Monthly Risk Reporting

다. 수익구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 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므로, 편입된 주식 등의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 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p>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해외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내파생상품 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변동보다 더 큰 손익을 가져오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 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 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수익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2부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 험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수익자, 기준 수익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및 해외 관련 국가들의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주식을 약관상 6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을 약관상 30% 초과 60% 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형 포함)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을 약관상 30%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신탁 - 이머징마켓채권,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이상의 국공채, 회사채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 MMF

- 주1) 투자위험등급분류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2)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편입하고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3)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합니다.
- 주4)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율 등을 기초로하여 분류 합니다.
- 주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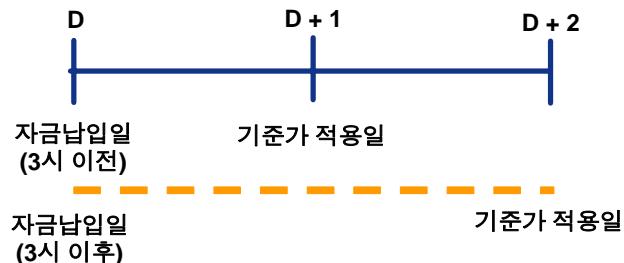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A2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E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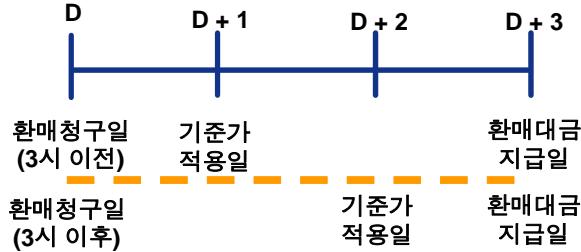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Class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Class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Class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01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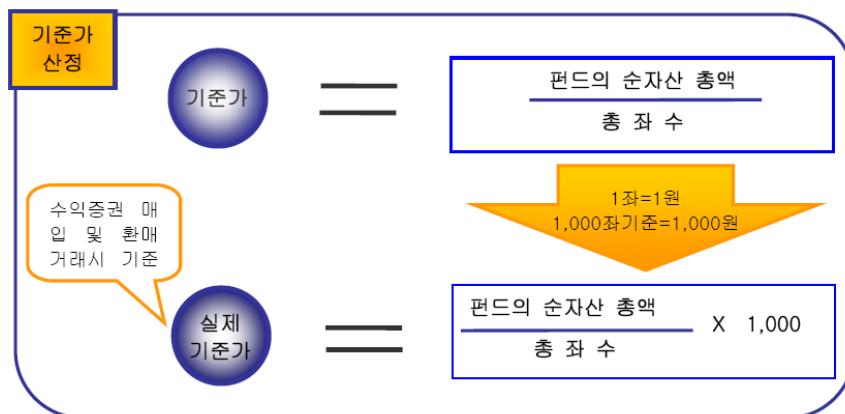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기준가격(Class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Class별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Class별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lobalinvestors.co.kr)·판매회사·협회(http://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평가방법(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권 가운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2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1.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합계	납입금액의 1%+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Class I 수익증권 Class 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합계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Class A	Class A2	Class E	Class I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전용	펀드, Wrap 등	
집합투자업자	0.650	0.650	0.650	0.650	매3개월
판매회사	1.540	0.700	1.080	0.00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0	0.010	0.010	0.010	
보수합계	2.230	1.390	1.770	0.690	
기타비용	0.034	0.034	0.034	0.034	발생 시
총보수·비용	2.264	1.424	1.804	0.724	매3개월
증권거래비용	0.953	0.953	0.953	0.953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회계연도(2008.3.3~2009.3.2)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접 회계연도(2008.3.3~2009.3.2)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Class A2, Class E, Class I는 미설정인 관계로 Class A의 기타 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수익증권	-	226	714	1,251	2,848
Class A2 수익증권	99	241	548	886	1,890
Class E 수익증권	-	108	342	599	1,363
Class I 수익증권	-	72	228	400	911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3) 종류별(Class A와 Class A2)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때에 다음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6항, 동 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적립식 가입의 경우 세제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 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준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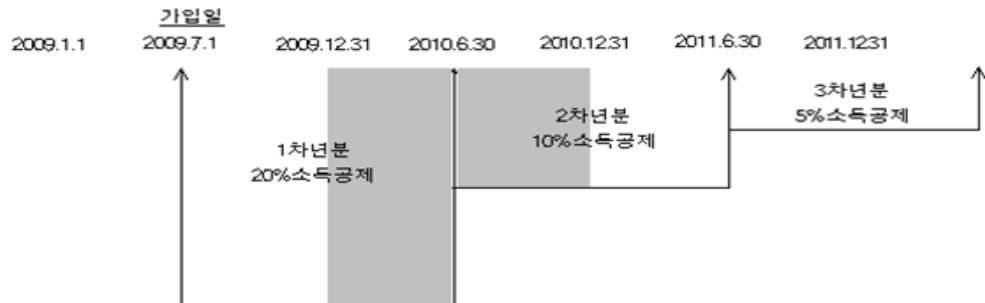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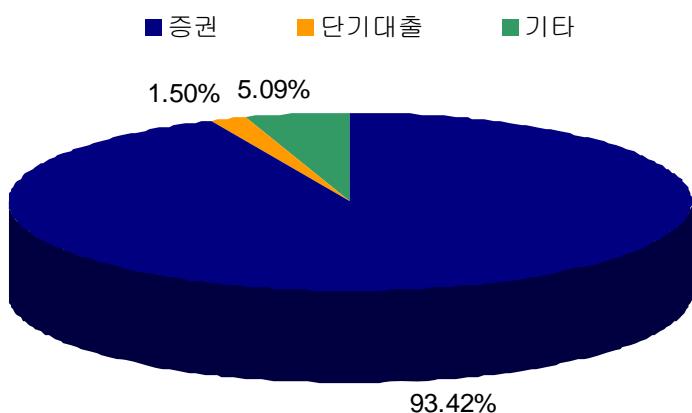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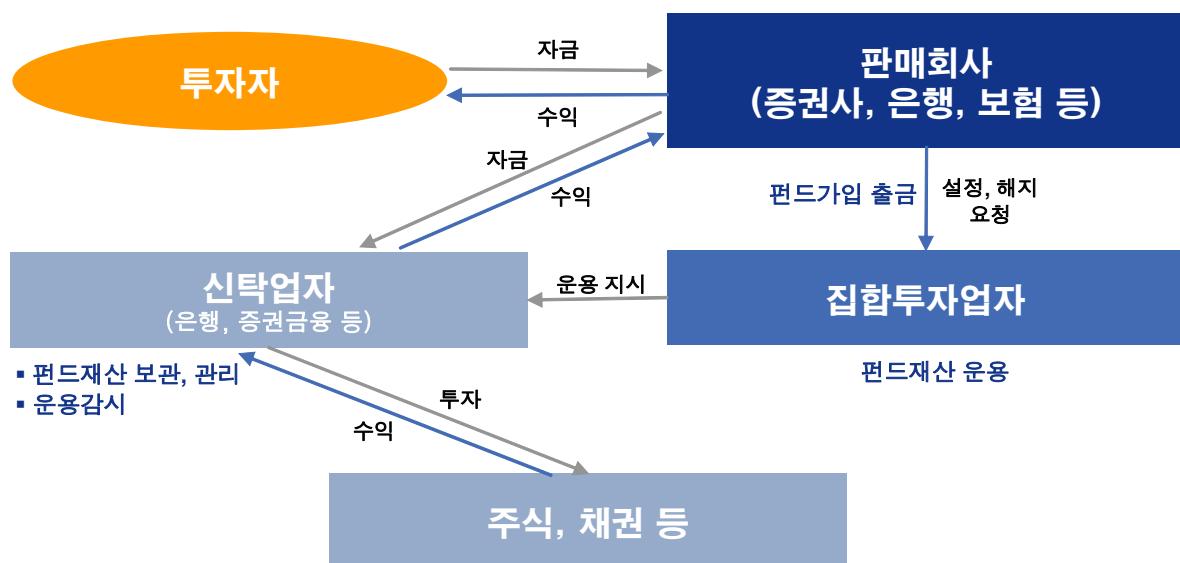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 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생명빌딩 18 층 02-2071-9900
회사연혁	2000.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자본금	200억
주요주주현황	알리안츠SE:50%, Allianz Global Investors Asia Pacific GmbH:5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9층 TEL) 02-6714-4625
회사연혁등	설립일: 2003년 4월 1일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③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 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 층

	☎ 02-399-3350	건물 4 층 ☎ 02-3215-1450	☎ 02-398-39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 : 2000. 5. 29 - 등록일 : 2000. 7. 1 - 자본금 : 50 억원 (www.koreabp.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 : 2000. 6. 20 - 등록일 : 2000. 6. 30 - 자본금 : 30 억원 (www.bond.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 : 2000. 6. 15 - 등록일 : 2000. 6. 15 - 자본금 : 47.5 억원 (www.npricing.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30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p>1) 선정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p>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마케팅비용 ④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증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

	예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중도환매를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코드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 등을 사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